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3235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323577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영주시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소74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20. 7. 15.

판결 선고2020. 9. 16.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소 74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피고의 직원인 C이 2013. 4. 4. 관리단 통장에서 인출하여 하수관 구입비로 사용한 200만 원, ② 위 C이 2013. 7. 2. 같은 통장에서 인출하여 인건비로 사용한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이 실제로는 원고 개인의 돈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지급의무 있는 하수관 공사비 등에 지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 ①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②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패소한 제1심판결 중 ①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7. 성남시 분당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의 청소, 공용부분 시설관리, 관리비 징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이던 C은 2013. 4.경 건물 하수구가 막히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자 당시 '소유주 분담금'이라는 표지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2013. 4. 4. 2,000,000원을 인출하여 하수도 공사를 위한 하수관 구입비로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라 한다). 한편 C은 당시 '피고의 사정에 의해 하수구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지출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단장님(원고를 의미함) 소유 은행통장에서 20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피고로부터 결재되는 대로 반환입금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업무협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및 2015. 9. 위 하수도 공사비 명목으로 각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하여 이를 각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1. 원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어야 하고, 관리단과 계약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평가됨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부당이득반환의무자라고 주장하며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정당한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가 인출된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은

실제로는 원고가 이전에 대납했던 돈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원고 개인 돈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서 자신의 돈으로 하수구 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인 C은 하수구가 막히는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피고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여유가 없자 원고의 개인 돈이 들어 있던 위 통장에서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는 자신이 지출했어야 할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를 원고의 돈으로 사용하여 지출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직원인 C이 2013. 4. 4. 원고와 업무협의를 거쳐 원고의 확인까지 받은 다음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를 원고 주장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들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부당이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원고 주장의 자금지출을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나 사무관리비용 내지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을 제3호증(피고의 2015. 9. 11. 내부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집수정파이프 원고 선납분'에 대해 2,000,000원 반환지출을 결의한 내용 및 앞서 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부과 내역과 원고에 대한 송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송금으로써 원고에 대한 2,000,000원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000원은 관리단 운영비 중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의 관리단 운영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수관 구입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인섭

판사최미복

판사이준규